####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5031 제출연월일: 2024. 10. 30.

제 출 자:정 부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・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・보급에 필요한 사업과 「해운법」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, 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은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, 「국가재정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등은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,

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하고,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1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 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 발 및 이용·보급에 필요한 사업
- 12. 「해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제29조 중 "세출예산의 각 세항(細項) 및 목(目) 경비를"을 "세출예산에 서 정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

제35조제3항 중 "공인회계사"를 "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(이하 "회계감사인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을"로 한다.

제35조의2(회계감사인의 선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,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,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 용한다. 이 경우 "감사인"은 "회계감사인"으로, "회사"는 "지방직영기 업"으로, "감사인선임위원회"는 "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"로 본다.

제40조제2항 중"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제1항"을"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제1항"으로 한다.

제49조의 제목 "(설립)"을 "(설립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(상호 협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)의 관할 구역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제5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.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·심사를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

- 가.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
- 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(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)
- 다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 성조사
- 2.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쳤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
- 제66조제2항 중 "지정하는 공인회계사"를 "선임하는 회계감사인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  - ④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,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,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,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, 제10조제5항, 제21조제1항,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감사인"은 "회계감사인"으로, "회사"는 "공사"로, "감사인선임위원회"는 "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"로, "제10조"는 "제66조제2항"으로 본다.

제81조부터 제83조까지를 각각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로 하고, 제6장에 제81조 및 제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1조(벌칙) ① 공사의 사장, 공단의 이사장 또는 공사·공단의 감사나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64조의2제1항·제6항(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② 공사의 사장, 공단의 이사장, 공사·공단의 감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
  - 2.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
  - 3. 제66조제2항(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 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
  - ③ 공사의 사장, 공단의 이사장 또는 공사·공단의 감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
  - 2. 회계감사인의 열람, 복사,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· 방해·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  - 3.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- 제82조(벌칙) ① 회계감사인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.
  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. 다만,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(價額)을 추징한다.

제83조(종전의 제81조) 중 "제65조 또는 제66조제2항(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"을 "제65조를"로 한다.

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2조제1항제11호·제12호, 제29조, 제40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제3항, 제35조의2 및 제66조(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은 이

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다음	제2조(적용 범위) ①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
사업(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			
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제5조에			
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			
•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			
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			
업(이하 "지방직영기업"이라 한			
다)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			
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			
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			
적용한다.		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11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		
	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		
	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		
	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		
	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・		
	보급에 필요한 사업		
<u>&lt;신 설&gt;</u>	<u>12. 「해운법」 제3조제1호에</u>		
	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
제29조(예산의 전용) 관리자는 예	제29조(예산의 전용)		
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			

에서 정하는 과목(科目)을 제외하고는 <u>세출예산의 각 세항(細項) 및 목(目) 경비를</u> 전용(轉用)할 수 있다.

제35조(결산) ① • ② (생 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<u>공인회계사</u>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<신 설>

	세출	예산이	]서	정한	각
정책사	 업 내	 의 예신	<u></u>	범위여	메서
각 단위	니사업	또는	목의	] 금호	백을

제35조(결산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

- ③ -----
- \_\_\_\_\_

-----.

- 제35조의2(회계감사인의 선임 등)
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
  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
  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・운영
  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 임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 로 정한다.
  -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,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

제40조(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) 제40조(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제1항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 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49조(설립) ① ~ ④ (생 략)

<신 설>

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 에 관하여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 제9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, 제10조제 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용한 다. 이 경우 "감사인"은 "회계감 사인"으로, "회사"는 "지방직영 기업"으로, "감사인선임위원회" 는 "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"로 본다.

① (현행과 같음)

(2)	
	「공유재산 및
물품 관리법」 저	]10조의2제1항 -

제49조(설립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 다 른 지방자치단체(상호 협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)의 관 할 구역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 제54조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) 제54조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) ①·② (생 략) <신 설>

을 추진할 수 있다.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 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 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.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제외 사 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.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사 · 심사를 거쳤거 나 제외된 사업
  - 가.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 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 사
  - 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(해당 공사 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)

③ (생략)

제66조(결산) ① (생 략)

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- 다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」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
- 2.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쳤 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 업에 해당하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
- 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 제66조(결산) ① (현행과 같음)
  - ② --------------- 선임하는 회계감사인----
    - \_\_\_\_\_
    -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 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    - ④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,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,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, 이사 또는 감사 등의

<신 설>

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「주식회 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」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 지, 제10조제5항, 제21조제1항,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감 사인"은 "회계감사인"으로, "회 사"는 "공사"로, "감사인선임위 원회"는 "회계감사인선임위원 회"로, "제10조"는 "제66조제2 항"으로 본다.

제81조(벌칙) ① 공사의 사장, 공 단의 이사장 또는 공사·공단의 감사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 람이 제64조의2제1항·제6항 (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회계처 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 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공사의 사장, 공단의 이사장, 공사·공단의 감사나 회계업무 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회계감 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-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감사 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
- 2.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 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적은 경우
- 3. 제66조제2항(제76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)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작 성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공사의 사장, 공단의 이사장 또는 공사·공단의 감사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.
- 1.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
- 2. 회계감사인의 열람, 복사, 자 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조사

<신 설>

를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3.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

제82조(벌칙) ① 회계감사인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또는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하당하는 금액이 5배에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. 다만, 그

제81조(벌칙)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(감사는 제외한다)이 제65 조 또는 제66조제2항(제76조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)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제82조·제83조 (생 략)

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
으면 그 가액(價額)을 추정한다.
제83조(벌칙)
<u>제65</u>
<u> 조를</u>
<u>제84조</u> · <u>제85조</u> (현행 제82조 및
제83조와 같음)